

KLR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6호

# Global Legal Issue

##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 연성법 정보 공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KLRI  
**Global Legal Issue**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 연성법 정보 공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

## CONTENTS

<b>I. 서설</b>	<b>09</b>
<b>II. UN 외기권위원회 연혁 및 기능</b>	<b>12</b>
1. UN 외기권위원회의 설립 및 발전	12
2. UN 외기권위원회의 기능 및 구조	14
3.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	16
<b>III.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제62차 회기 주요 의제</b>	<b>19</b>
1. 2023년도 제62차 회기 개관	19
2. 의제 제5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22
3. 의제 제6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23
4. 의제 제11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26
5. 의제 제12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29
6. 의제 제13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34
7. 의제 제14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35
<b>IV. 함의 및 시사점</b>	<b>37</b>
<b>참고문헌</b>	<b>41</b>

---



## 요약

- UN 외기권위원회는 우주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 우주 이슈들에 대한 최고의 논의의 장이며, 특히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5개 우주조약 채택 등을 포함하여 우주 관련 규범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임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장민영 연구위원, 윤인숙 연구위원)에서는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였는 바, 이에 관련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분석 및 소개함
- 의제 제5번(우주조약의 현황 및 적용) 관련 주요 논의
  - 우주 분야 조약들의 법적 구속력 및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국의 우주활동이 조약에서 정하는 바와 부합하여야 함을 촉구함
  - 기술적 발전을 감안하여 우주잔해물, 우주물체의 충돌, 핵동력원의 사용, 정지궤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우주자원의 이용 등 새로운 법적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됨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규모 군집위성 관련 우주물체의 등록 관행 강화가 요청됨
- 의제 제6번(우주의 개념 및 경계 그리고 정지궤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관련 주요 논의
  - 우주의 개념 및 경계에 있어서 종래의 공간적 접근론과 기능적 접근론 대립이 여전히 지속됨
  - 정지궤도의 과밀화 현상에 대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우주의 전용 금지 및 정지궤도의 공평한 접근 및 이용 확보 주장이 제기됨
  - 정지궤도 이슈를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우주 이슈로서 법률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었음

## 요약

- 의제 제11번(우주잔해물 경감 관련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 관련 주요 논의
  - 우주잔해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됨
  - 우주잔해물 문제는 운영궤도에서의 제거, 폐기궤도로의 이동 또는 대기로의 재진입 등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한편 등록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제거 또는 폐기는 용납될 수 없다는 반대도 있었음
  - 우주활동을 많이 수행하는 국가들이 우주잔해물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상대적 책임론도 주장됨
  
- 의제 제12번(비구속적 UN 문서에 대한 정보 공유) 관련 주요 논의
  - 비구속적 UN 문서가 다양한 우주활동의 규범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보충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만, 비구속적 UN 문서가 우주 관련 국제조약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됨
  - 특히, 새로운 우주 규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우주자원의 이용, 우주잔해물 경감 등에 있어서 경성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연성법 중에서도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의 국내법을 통한 이행이 독려됨
  
- 의제 제13번(우주교통관리) 관련 주요 논의
  - 우주활동의 급증과 우주잔해물 등으로 인한 우주활동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우주교통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됨
  - 이의 일환으로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우주 감시 및 추적 역량의 개발 및 운용 그리고 우주상황정보의 공유 등 국제협력이 강조됨

## 요약

- 의제 제14번(소형위성활동) 관련 주요 논의
  - 소형위성의 경우 개발도상국가, 대학, 한정적인 자원을 가진 사기업 등이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 있음
  - 소형위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소형위성의 활동 역시 우주조약 및 연성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한편, 종래의 규범으로는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이러한 규제가 개발도상국의 우주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함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우주자원 활용, 민간에 의한 우주활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바, 향후 새로운 우주조약의 성안 및 채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성법에 대한 회원국의 국내법적 수용을 독려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우주 분야 글로벌 규범 이행을 주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요청됨
  
-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우주 역량 증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우주법 분야에서의 연구 기반 확대를 비롯하여 비교법적 연구 강화를 토대로 국내 우주법 개선 및 관련 법률 정보의 국제적 공유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됨





# I 서설

## 우주활동의 증가와 다각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참여

- 종래 우주활동은 미국이나 소련 등 몇몇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는데, 통신 위성 및 항행위성 등이 인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주활동의 주체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에 의한 우주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다 보니 우주물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이래, 2010년 까지 1년에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건을 넘지 않았던 것에 반하여 2022년 한 해의 경우 2,000건이 넘는 우주물체가 발사되었음
- 대한민국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우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시작함
  - 당시 정부 주도로 우주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실험용 소형 과학위성 ‘우리별 1호’와 과학관측로켓인 ‘과학로켓 1호(KSR- I)’를 각각 1992년과 1993년에 발사하는 성과를 이루었음<sup>1)</sup>
  - 1999년에는 국내 최초의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1993년 발사된 과학로켓보다 발전된 ‘중형과학로켓(KSR- II)’을 개발하며 고체로켓 분야의 기초기술을 획득함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주개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우주개발에 관한 법제도가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인공위성 및 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이 점차 확대되었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0 우주개발 백서, 2020.12., 96쪽 참조.

- 특히,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였는데,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의 전 과정을 한국의 독자 기술로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의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이자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개국에 꼽히는 우주기술 강국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

## 우주시대 도래와 UN 외기권위원회의 탄생 및 발전

- 1957년 소련이 최초로 우주물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류에게 다가오게 되면서 당시 우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촉발되었으며 이에 1959년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UN COPUOS” 또는 “UN 외기권위원회”)”가 설립되었음
- UN 외기권위원회는 우주 분야 과학기술 이슈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소위원회와 규범 이슈를 다루는 법률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발족 이후 UN 외기권위원회는 우주 분야 최고의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하면서 우주 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오고 있음
- 특히,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우주 분야 5개 국제조약을 성안 및 채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제반 원칙 등 연성법 채택에도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음
- 최근 우주활동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보다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국가적 입장을 공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개최 및 참여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장민영 연구위원, 윤인숙 연구위원)에서는 우주법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우주법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 발굴,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및 향후 국내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오고 있음

-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2023년도에는 사업의 일환으로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에 정부대표단으로 공식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회의에서의 정부활동을 지원하였음

〈표 1〉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우주법 연구 목록

연도	제목	형식
2022년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장민영 외)	연구보고서
	우주 안보 쟁점 관련 각국 입장 검토 -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 규칙 및 원칙을 통한 우주 위협 경감 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성원 교수)	이슈페이퍼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글로벌 규범	번역자료집
2021년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장민영)	이슈페이퍼
	호주 우주법	번역자료집
2020년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III - 우주교통관리 등 UN COPUOS 논의를 중심으로 - (박배근·장민영 외)	연구보고서
2019년	우주자원의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 및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을 중심으로 - (이재곤 교수)	연구보고서
2016년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 IV - 우주폐기물 관리 및 배상 책임에 관한 법제 연구 - (신홍균 교수)	연구보고서
	미국 우주법제 연구 - 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을 중심으로 - (윤인숙)	연구보고서

- 본 Global Legal Issue는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회기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현황을 분석 및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주요 의제 중에서 의제 제10번인 “우주자원의 탐사, 채굴 및 활용의 향후 법적 모델에 대한 의견 교환”은 Global Legal Issue 제8호에서 논의함에 따라, 본 Global Legal Issue에서는 다루지 아니함

## II UN 외기권위원회 연혁 및 기능

### 1. UN 외기권위원회의 설립

#### UN 외기권 위원회의 설립 및 발전

- 1957년 10월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Sputnik 1) 발사 및 성공은 우주법 시대의 개막을 이끌었으며 우주 공간도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더불어 인간의 활동 공간으로서 우주에 대한 법적인 규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논의들이 촉발됨
- 우주 관련 기술, 법 등 여러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1958년 UN 총회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를 설립하여 우주 활동과 자원에 대한 국제 협력과 법적 이슈들을 다룰 기구 설립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함<sup>2)</sup>
  - 특히,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에 대한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 더 이상의 위험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UN이 우주 이슈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음
- 이후 UN 총회는 결의를 통해 1959년 12월 12일 기존의 임시위원회를 상설위원회인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UN COPUOS” 또는 “UN 외기권위원회”)”로 정식 발족함

2) UN GA Resolution 1384(X III), Dec. 13, 1958.

## UN 외기권위원회의 발전

- UN 총회 및 UN 외기권위원회는 회원국들, 특히 우주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국의 우주 기술과 우주 정책을 홍보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다 보니 우주 개발 초기 단계에서 우주 탐사와 이용에 대한 규율을 수립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였음<sup>3)</sup>
-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 위원회가 미 세력권 국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소련의 비협조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가, 1961년 소련의 요구대로 의사결정 방식을 컨센서스(consensus)로 합의하고 외기권위원회를 UN 총회의 보조기구로 두도록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임무에 착수함
- 1962년 첫 회합을 가진 UN 외기권위원회는 이후 매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만나 우주 분야 기술 및 법적 이슈의 논의 및 국제협력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함
- UN 외기권위원회는 우주활동 문제에 대해 각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sup>4)</sup>
  - 더불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교류의 장을 국제사회에 제공함<sup>5)</sup>
  - 급격히 변화하는 우주기술로 인하여 우주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UN 외기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리하는 성공적인 기반을 제공함

3) II 부분은 박배근 장민영 외,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III - 우주교통관리 등 UN 외기권위원회(COPUOS)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9. 제2장-제1절-1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한 내용임.

4) UN Office of Outer Space Affairs, Annual Report 2019, 2020.

5) 상계 보고서.

- UN 외기권위원회의 정회원국 수는 1959년 정식 발족 당시 24개 국가에서 매년 확장되어 2023년 6월 기준, 총 102개 회원국<sup>6)</sup> 및 49개 옵저버 기관<sup>7)</sup>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음
  - 대한민국은 1994년부터 말레이시아와 윤번제(2년 임기) 위원국으로 활동하다 2001년부터 정식 회원국이 되었음<sup>8)</sup>
    - \* 북한은 현재 미가입 상태임

## 2. UN 외기권위원회의 기능

### UN 외기권 위원회의 기능 및 구조

- UN 외기권위원회는 UN 체제에서 외기권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사항들을 담당하는 유일한 위원회로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건들을 개선시키는 한편, 외기권을 관할하는 국제법적인 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sup>9)</sup>을 두고 있음
- 더 나아가 UN 외기권위원회는 “개별국,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우주 과학과 기술의 활용 및 응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sup>10)</sup>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 협력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증대<sup>11)</sup>시키는데 그 핵심 기능이 있음

〈표 2〉 UN 총회 결의안 제1472호

<p>(a) To review, as appropriate,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study practical and feasible means for giving effect to programmes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could appropriately be undertaken under United Nations auspices, including, inter alia:</p>	<p>(a) 국제협력 부문에 대한 적절한 검토 그리고 UN의 후원 하에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수단에 대한 연구로서, 그 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하여:</p>
---	---

6)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Membership Evolution,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members/evolution.html>. (2023.8.30. 최종방문).

7)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Observer Organizations,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members/copuos-observers.html>. (2023.8.30. 최종방문).

8) UN G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6/51 para. 40, Feb. 15, 2002.

9)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ts Subcommittees,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comm-subcomms.html>. (2023.8.30. 최종방문).

10) 상계 문서.

11) 상계 문서.

<p>(i) Assistance for the continuation on a permanent basis of the research on outer space carried 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p> <p>(ii) Organization of the mutual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outer space research;</p> <p>(iii) Encouragement of national research programmes for the study of outer space, and the rendering of all possible assistance and help towards their realization;</p> <p>(b) To study the nature of legal problems which may arise from the exploration of outer space;</p>	<p>(i)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의 체계 내에서 수행되는 외기권에 대한 상시적 연구 지속을 위한 원조;</p> <p>(ii) 외기권 연구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과 정보 확산을 위한 조직;</p> <p>(iii) 외기권 연구를 위한 국내 연구 프로그램의 독려와 그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원조와 지원의 수립;</p> <p>(b) 외기권 탐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연구;</p>
---	--

출처: 저자 번역

## UN 외기권위원회의 구조

- UN 외기권위원회는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 이하 “법률소위원회” 또는 “LSC”)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우주업무사무소(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사무국은 의장, 1등 부의장, 2등 부의장, 서기관, 각 소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서유럽, 기타 그룹 중 다섯 개의 그룹에서 2년을 임기로 번갈아 임명됨<sup>12)</sup>

12)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ts Subcommittees,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comm-subcomms.html>>. (2023.8.30. 최종방문).

### 3.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설립

#### UN 외기권 위원회 법률소 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는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국제우주법 제정 및 회원국의 조약의 이행점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법률소위원회의 활동도 UN 외기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않다가 1961년 UN 총회 결의 제1721호<sup>13)</sup> 채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역할

- 법률소위원회는 UN 총회 결의 제1472호<sup>14)</sup>와 제1721호<sup>15)</sup>에 따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라는 업무를 부여받음
- 1963년 미국과 소련이 양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법률소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음. 법률소위원회는 1963년 “외기권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s of Outer Space)”<sup>16)</sup>을 시작으로 1982년 “국가의 국제직접TV방송을 위한 인공위성의 이용을 규율하는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sup>17)</sup>, 1986년 “외기권에서의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sup>18)</sup>, 1992년 “외기권에서 원자력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sup>19)</sup>, 1996년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외기권 탐사와

13) UN GA Resolution 1721(XVI), Dec. 20, 1961.

14) UN GA Resolution 1472(XIV), Dec. 12, 1959.

15) 앞의주 13.

16) UN GA Resolution 1962 (XVIII):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Dec. 16, 1963.

17) UN GA Resolution 37/92: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Dec. 10, 1982.

18) UN GA Resolution 41/65: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Dec. 3, 1986.

19) UN GA Resolution 47/68: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Dec. 14, 1992.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sup>20)</sup> 등 총 5개의 원칙 및 선언의 채택을 이끌었음

- 더 나아가 법률소위원회는 5개의 우주조약을 성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2023년 기준 5개 우주 분야 국제조약과 이들의 채택·발효 상황 및 비준·서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우주 관련 UN 조약 목록

조약명		채택/발효일	비준/ 서명국가 현황
원문명	번역명		
1967 OST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uter Space Treaty)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외기권조약)	1966년 12월 12일 채택 1967년 10월 10일 발효	112/23
1968 ARRA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Rescue Agreement)	우주항공사의 구조,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구조협정)	1967년 12월 19일 채택 1968년 12월 3일 발효	99/23
1972 LIAB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Liability Convention)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책임협약)	1971년 11월 29일 채택 1972년 9월 1일 발효	98/19

20) UN GA Resolution 51/122: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Dec. 13, 1996.

조약명		채택/발효일	비준/ 서명국가 현황
원문명	번역명		
1975 REG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Registration Convention)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등록협약)	1974년 11월 12일 채택 1976년 9월 15일 발효	72/3
1979 MOON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oon Agreement)	달과 기타 천체에 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달협정)	1979년 12월 5일 채택 1984년 7월 11일 채택	18/4

출처: UN COPUOS, Statu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activities in outer space as at 1 January 2022, A/AC.105/C.2/2022/CRP.10

- 5개 UN 우주 조약들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또는 가입 현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 UN 우주 조약들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또는 가입 현황

연도 \ 수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조약
2010년	100	91	80	53	13
2016년	104	94	92	62	16
2022년	112	99	98	72	18

- 전술한 5개 우주 분야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달조약을 제외하고 비준 또는 가입하였으며, 해당 조약별 발효일은 다음과 같음

〈표 5〉 우주 관련 UN 조약 관련 대한민국 비준 또는 가입 현황

조약	대한민국 발효일
외기권조약	1967.10.13.
구조협정	1969.4.4.
책임협약	1980.1.14.
등록협약	1981.10.15.
달협정	X

출처: UN COPUOS, Statu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activities in outer space as at 1 January 2022, A/AC.105/C.2/2022/CRP.10

# Ⅲ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제62차 회기 주요 의제

## 1. 일정 및 참석자

### 2023년도 제62차 회기 개관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는 2023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음
- 제62차 회기는 종래와 같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동시에,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그림 1〉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



출처: UN OOSA, Legal Subcommittee: 2023 Webcast (LSC PLENARY SESSIONS)

- 이번 회기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84개 회원국 및 9개 옵저버 기관이 제62차 법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음.<sup>21)</sup> 한편 비회원국 중에서 우간다가 참여하였고 그 밖에 16개의 비정부기구도 참여하였음<sup>22)</sup>

21) UN COPUOS LSC, List of Participants, A/AC.105/C.2/2023/INF/54 (Apr. 18, 2023).

22) 상계 문서.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에서는 총 20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에서는 채택된 의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였음
- 제62차 회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작업반이 운영되었음

**〈표 6〉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작업반 목록**

구분	공식명칭	번역
1	Working Group on the Status and Application of the Five United Nations Treaties on Outer Space	5개 UN 우주조약의 현황 및 적용에 관한 작업반
2	Working Group on Legal Aspects of Space Resource Activities	우주자원활동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작업반
3	Working Group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우주의 개념 및 경계에 관한 작업반

출처: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 최종보고서

## 의제 목록

- 제62차 회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16개 의제가 채택되어 논의됨
  - 전체 중에서 정규 안건(regular items)은 9개, 단일 안건(single items)은 4개, 복수년 안건(items under workplans)은 1개 그리고 신규 안건(new items)은 1개임

\* 정규 안건은 의제로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단일 안건은 원칙적으로 논의 기한이 1년이지만 다음 회기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인지를 매년 결정함. 복수년 안건은 해당 의제에 관련한 작업반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작업반 운영 기간 동안 계속 논의하는 것임. 한편, 신규 안건은 차년도 회기에서 새롭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제를 제안하는 것임<sup>23)</sup>

**〈표 7〉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 의제 목록**

순번	의제명		의제종류
1	Adoption of the agenda	의제 채택	정규
2	Statement by the Chair	의장 성명	정규

23)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최근 논의 현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6. 30., 138쪽 참조.

순번	의제명		의제종류
3	General exchange of views	일반적인 의견 교환	정규
4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ing to space law	우주법과 관련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	정규
5	Status and application of the five United Nations treaties on outer space	우주에 관한 5개 UN 조약 현황 및 적용	정규
6	Matters relating to: (a)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b) The character and utilization of the geostationary orbit, including consideration of ways and means to ensure the rational and equitable use of the geostationary orbit without prejudice to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다음에 관한 사항: (a) 우주의 정의 및 경계; (b) 정지궤도의 특성과 활용으로서 국제전기통신 연합(ITU)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고 정지궤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고려를 포함함	정규
7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우주의 평화적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내법	정규
8	Capacity-building in space law	우주법 역량 강화	정규
9	Future role and method of work of the Committee	위원회의 향후 역할 및 작업 방법	정규
10	General exchange of views on potential legal models for activities in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우주자원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한 잠재적인 법적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	복수년
11	Gener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views on legal mechanisms relating to space debris mitigation and remediation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work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과학기술소위원회의 작업을 고려하여 우주잔해물 경감 및 복원 방안에 관한 법적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	단일

순번	의제명		의제종류
12	General exchange of information on non-legally binding United Nations instruments on outer space	우주에 관한 비구속적 UN 문서에 관한 일반적 정보 공유	단일
13	General exchange of views on the legal aspects of space traffic management	우주 교통의 법적 측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	단일
14	General exchange of view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small-satellite activities	소형위성 활동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	단일
15	Proposals to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for new items to be considered by the Legal Subcommittee at its sixty-third session	외기권위원회에 대한 제63차 법률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새로운 의제 제안	신규
16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외기권위원회에 보고	

출처: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62차 회기 최종보고서

## 2. 의제 제5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의제 제5번은 우주에 관한 5개의 UN 조약의 현황 및 적용에 관한 것임
  - 해당 의제는 1997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36차 회기에서 차년도 의제 중 하나로 “우주에 관한 5개의 국제조약 현황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선정하였고,<sup>24)</sup> 이에 따라 1998년 제37차 회기에서 처음으로 동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함<sup>25)</sup>
- 제62차 회기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우주 분야 UN 조약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발언들이 오가는 한편, 이와 같은 조약들의 법적 구속력 및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언급하면서 각국의 우주활동이 동 조약들이 정하는 바와 합치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sup>26)</sup>

24)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the work of its 36th session (1–8 April 1997), A/AC.105/674 para. 43 (Apr. 14, 1997).

25)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the work of its 37th session (23–31 March 1997), A/AC.105/698 para. 46 (Apr. 6, 1998).

26)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sixty-second session, held in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23, A/AC.105/128 paras. 61–63 (Apr. 13, 2023).

- 특히, 제62차 회기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기존의 외기권조약 이외에도 우주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발전을 감안하여 우주잔해물, 우주물체의 충돌, 핵동력원의 사용, 정지궤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및 우주자원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sup>27)</sup>
-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 회기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sup>28)</sup> 지구 저궤도에 네트워크화된 위성들의 군집이 형성되면서 천문 관측 교란, 전파 간섭 또는 혼신(混信), 우주물체의 충돌, 우주잔해물 증가 등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62차 회기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군집위성(large constellations and megaconstellations) 이슈는 우주물체에 관한 광범위한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한편, 대규모 군집위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주물체 등록 관행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었음

### 3. 의제 제6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의제 제6번은 우주의 개념 및 경계 그리고 정지궤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에 관한 것임
  - “우주의 개념 및 경계”에 관한 논의는 구조협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6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의제임<sup>29)</sup>
- 우주의 비전유(non-appropriation) 원칙에 따라서 우주 공간에서의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이 허용되는 반면, 우주의 경계에 해당하는 대기권(airspace)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이 미치는 영공(領空)으로서 우주의 경계를 획정한다는 것은 개별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음

27) 상계 보고서, para 64.

28) UN COPUOS,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sixtie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6 to 17 February 2023, A/AC.105/1279 paras. 31 and 286 (Feb. 27, 2023).

29)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the work of its 6th session (19 June - 14 July 1967), A/AC.105/37 para. 18 (July 14, 1967).

-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주의 개념 및 경계 설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소위 ‘공간적 접근론(spatial approach)’과 ‘기능적 접근론(functional approach)’이 그것임<sup>30)</sup>
  - ‘공간적 접근론’은 우주의 개념 및 경계의 확정은 우주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 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우주 관련 각종 국제 규범 및 국내법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주권이 미치는 영역과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이 가능한 우주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우주활동에 대한 우주조약에서의 기본 원칙들의 적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각국의 주권 및 국제책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sup>31)</sup> 이러한 의견을 취하는 국가들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알제리,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우주의 경계는 해수면에서 100km에서 110km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sup>32)</sup>
  - 한편, ‘기능적 접근론’은 우주에 대한 물리적 경계를 특정하는 것 보다는 우주물체의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sup>33)</sup> 이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이 주장하는 견해로써<sup>34)</sup> 이러한 방식은 우주활동의 시작부터 이미 규범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우주의 개념 및 경계를 확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체계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sup>35)</sup>
- 이와 같은 입장의 대립은 제62차 회기에서도 여전한 상황이지만 우주의 개념 및 경계에 대한 의견일치(consensus)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서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sup>36)</sup>

30) 이재완, 「최근 우주법의 주요 문제 - UNISPACE III 이후의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 51쪽 참조.

31) UN COPUOS, Historical Summ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AC.105/769/Add.1 para. 5 (Feb. 3, 2020).

32)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최근 논의 현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제1호, 2014, 140쪽 참조.

33) 이재완, 전계 논문 참조.

34) 정영진, 전계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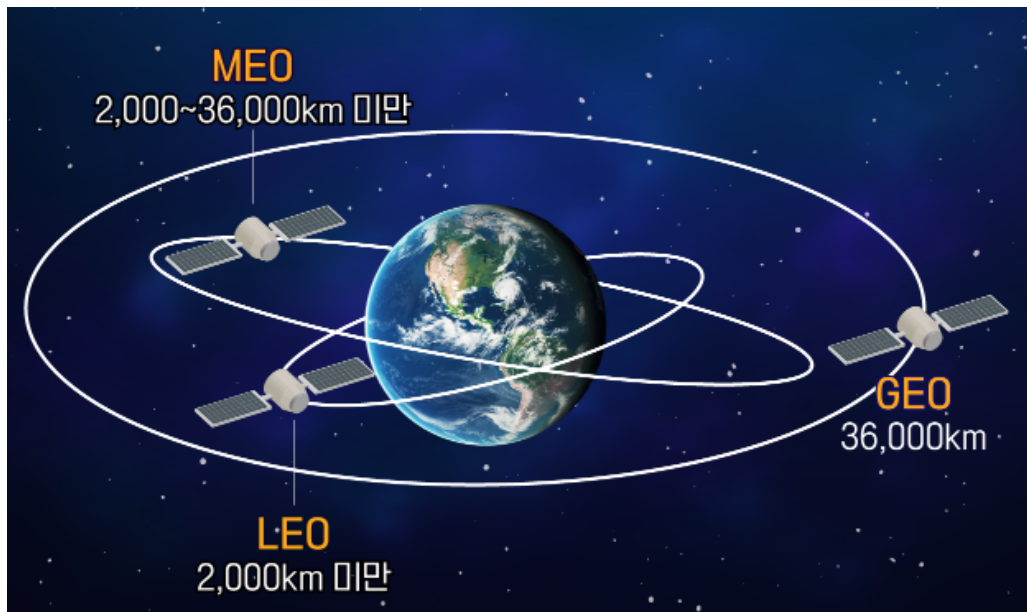
35) 앞의 주 26, paras. 84 and 85.

36) 상계 보고서 paras. 89 and 90.



- 우주의 개념 및 경계에 관한 의제에서는 1977년 이래로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sup>37)</sup> 최근 우주활동이 급증하면서 우주 선진국 및 민간 기업들에 의한 정지궤도의 과밀화 현상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우주의 전용금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지궤도의 공평한 접근 및 이용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2〉 지구 궤도의 종류 : 정지궤도, 저궤도 및 중궤도



출처: KBS 뉴스, [테크톡] 누리호·머스크가 우주 저궤도에 쫓힌 이유? (2022.6.22.)

\* 지구정지궤도(GEO: geostationary orbit)는 고도가 약 36,000km인 곳으로서 궤도 공전주기와 지구 자전주기가 일치하여 해당지역에서 볼 때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송 통신 목적 위성 등에 활용성이 높은 곳임<sup>38)</sup>

\*\* 저궤도(LEO: Low Earth Orbit)는 고도 300km에서 1,500km 사이로서 궤도에 위성 수백 대를 띄워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지상에서 가까운 낮은 궤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파 왕복 시간이 짧아 손실도가 적고 통신 지연율이 0.025초로 타 통신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최근 소규모 위성 활용이 높은 궤도임<sup>39)</sup>

- 다만 지구정지궤도 문제는 무선주파수 할당과 함께 ITU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제기된 반면, 정지궤도 역시 우주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법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소위원회와 ITU에서의 논의가 관행과 기술규정들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반박이 있었음<sup>40)</sup>

37) 정영진, 전계 논문 참조.

38) KAIST, 인공위성관련 정보, [https://satrec.kaist.ac.kr/mobile/02\\_01.php](https://satrec.kaist.ac.kr/mobile/02_01.php) 참조. (2023.8.30. 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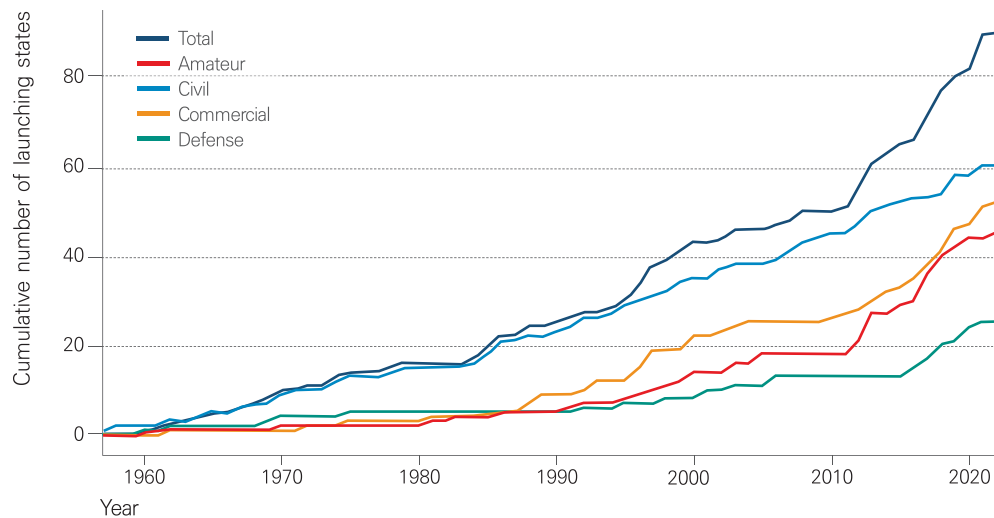
39) 김지선, SPREC Insight: 지구 저궤도(LEO) 활용 동향 및 정책과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2022.11.14., 6쪽 참조.

40) 앞의 주 26, paras. 92-98.

#### 4. 의제 제11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의제 제11번은 우주잔해물 경감 관련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에 관한 것임
  - UN COPUOS 법률소위원회는 2009년부터 우주잔해물 이슈를 단일의제로 정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오고 있음. 동 의제 선정은 UN COPUOS 과학기술 소위원회의 행보에 비하여 늦은 편에 속하는데, 과학기술소위원회는 1994년부터 이미 우주잔해물에 관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하여 왔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복수년의제로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국제 문서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sup>41)</sup>
-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우주시대가 개막된 이후, 각국의 우주활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우주시대 초기에는 우주물체 보유국이 몇몇에 지나지 않았다가 약 3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우주물체를 등록한 국가는 20개국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40개국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84개국이 되었음

〈그림 3〉 우주물체 등록 국가 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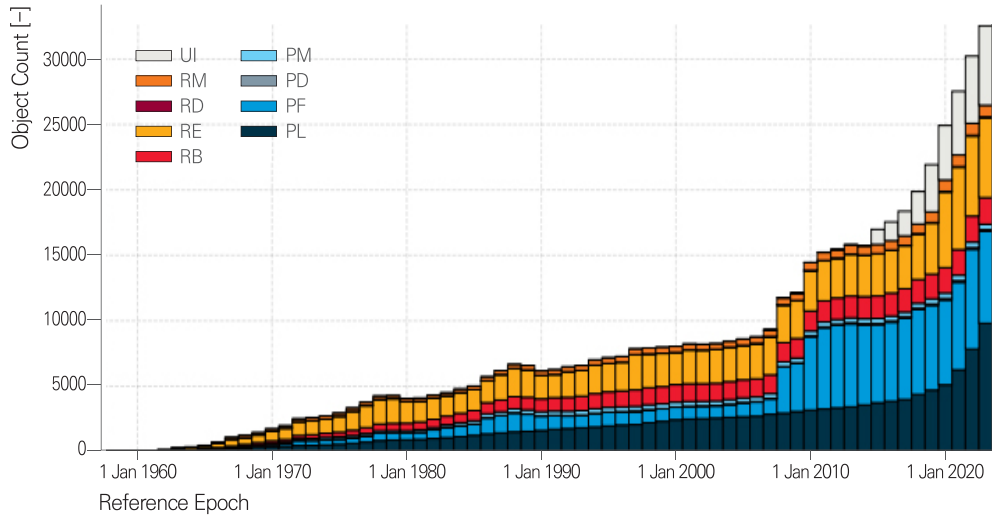


출처: ESA, ESA'S Annual Space Environment Report (June 12, 2023)

- 우주물체 등록 국가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우주물체의 수 역시 급증하였는데 궤도에 있는 우주물체의 수는 1980년도까지 5,000건이 안 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10,000건으로 늘었고, 2010년대 후반 20,00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에는 30,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41) 정영진, 전계 논문, 146-147쪽 참조.

〈그림 4〉 궤도상 우주물체 수 추이



출처: ESA, ESA'S Annual Space Environment Report (June 12, 2023)

- 우주감시네트워크(Space Surveillance Networks)에 의해 정기적으로 추적되는 우주 잔해물은 약 33,510건인 반면, 실제 우주잔해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10cm 이상 크기의 우주잔해물은 36,500건, 1cm~10cm 사이 크기의 우주잔해물은 100만개, 1mm~1cm 사이 크기의 우주잔해물은 1억 3천만개로 추산됨<sup>42)</sup>
- UN 외기권위원회는 우주잔해물 증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2007년 우주잔해물경감지침(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및 2019년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한 지침(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이하 “2019년 지침” 또는 “LTS 가이드라인”)을 채택함<sup>43)</sup>
- 더 나아가 UN 외기권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우주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동 지침들이 정하는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침상 규정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음<sup>44)45)</sup>

42) ESA, Space Debris by the Numbers, [https://www.esa.int/Space\\_Safety/Space\\_Debris/Space\\_debris\\_by\\_the\\_numbers](https://www.esa.int/Space_Safety/Space_Debris/Space_debris_by_the_numbers). (2023.8.30. 최종방문).

43) 2019년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민영 외,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참조.

44) 앞의 주 26, paras. 207-209.

45) 우주잔해물경감지침 및 국내법에서의 수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민영, 「Global Legal Issues: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21.12.30., 참조.

- 이의 일환으로 UN 외기권위원회는 우주잔해물 경감 관련 전용 웹페이지(<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topics/space-debris/compendium.html>)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주잔해물 관련 주요 국제 규범을 게시하는 한편, 우주잔해물 예방 및 경감을 위한 회원국 및 옵저버들의 법적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을 유도하고 있음
  -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약 50개 국가 및 유럽우주청(European Space Agency) 등 7개 기구가 우주잔해물 경감 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제62차 회기에서는 우주잔해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침과 같은 연성법 차원의 규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우주잔해물 경감은 기술의 진보와 연결되는 것이며 비용편익절충을 감안할 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성급하다는 반대도 있었음<sup>46)</sup>
- 특히, 저궤도에서의 우주잔해물 문제는 관련 지침의 자발적인 적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운영궤도에서의 제거, 폐기궤도(disposal orbit)로의 이동 또는 대기로의 재진입 등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등록국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이 제거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반대도 있었음<sup>47)</sup>
- 한편, 우주잔해물 관련하여 상대적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우주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경우 우주잔해물 제거 활동 등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sup>48)</sup>
- 낙하하는 우주잔해물과 관련하여 등록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사전에, 적정하고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우주잔해물 사안에 있어서는 정보, 지식 및 경험 공유에 대하여 상호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들도 피력되었음<sup>49)</sup>

46) 앞의 주 26, paras. 214-216.

47) 상계 보고서, paras. 218 and 221.

48) 상계 보고서, para. 222.

49) 상계 보고서, paras. 217 and 223.

## 5. 의제 제12번 논의 배경

### 의제 제12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의제 제12번은 비구속적 UN 문서에 관한 것임
  - 동 의제는 일본이 제안하여(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나이지리아 및 미국 공동 지지), 2013년 제52차 법률소위원회에서 신규의제로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됨
- 우주 관련 조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또는 각국이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음
  - 따라서 법적 구속력 없는 유엔 문서의 이행에 관한 국제기구,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의 입장, 실행방안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유엔 문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우주 분야 비구속적 문서 관련 대상을 특정하여 각국들에게 국내 실행에 대한 설문을 제안함
    - ※ 2014년도 설문대상(비구속적 문서 종류)을 설정하였으며, 2015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설문대상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함

〈표 8〉 우주 분야 비구속적 문서 관련 설문

설문연도	설문대상: 비구속적 문서 종류	채택일
2014	우주의 평화로운 사용에 대한 국제 협력	1962.12.10
	우주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의 선언	1963.12.13
	직접위성방송을 위한 국가의 인공위성 이용에 관한 규제 원칙	1982.12.10
	우주로부터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1986.12. 3
	우주에서 핵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	1992.12.14
	개도국을 고려한 모든 국가를 위한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선언	1996.12.13
	지구정지궤도 사용에 관한 몇몇 측면: 법률소위원회 채택 문서	
	“발사국” 개념의 적용 (Resolution 59/115)	2007.11.14
	우주 물체의 등록 관행 강화에 대한 권고 (Resolution 62/101)	2007.12.17
	외기권위원회 기술소위원회의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	
2015	개도국을 고려한 모든 국가를 위한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선언	1996.12.13
	우주로부터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1986.12. 3
	우주에서 핵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	1992.12.14
	(발사 등록)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Res.1721B (XVI))	1961.12.20
	기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우주에 관한 규범	

- 해당 설문에 대한 각국의 답변은 개요서(compendium)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우주 사무소 웹사이트 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공유됨(<https://www.unoosa.org/unosa/en/ourwork/spacelaw/nlbcompendium.html>)

※ 2016년: 호주,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태국, 터키 및 영국  
 2017년: 오스트리아 추가  
 2022년: 칠레, 요르단, 파키스탄 및 필리핀 추가

## 우주 분야 비구속적 문서의 중요성

- 우주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UN 문서는 1967년부터 1979년까지 총 5개 채택된 이래 성안·채택된 바 없으며, 우주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성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다 부각되고 있음
  - 5개 우주조약은 냉전시대 우주사업의 역량을 갖춘 몇몇 국가들 위주로 체결된 바, 체결국 이외의 다수 국가들을 규율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 한편, 달조약이 채택된 이후 우주사업은 우주강국 이외에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 의한 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바 비구속적 문서가 기존의 우주조약 가입을 하지 않는 신흥국들의 우주활동에 대한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됨
  - 뿐만 아니라 최근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우주활동이 급증하고 중요해짐에 따라서 종래 국가 단위로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던 조약으로는 현행 우주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우주기술의 경우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성안·채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약으로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는 연성법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의제 제12번 관련 주요 논의 연혁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유사하게 논의되어 옴
  - 비구속적 문서 관련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각국의 관행에 관한 정보 공유
  - 기존 우주조약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비구속적 UN 문서의 역할
  - 몇몇 국가의 국내법을 통해 비구속적 UN 문서 이행

- 우주의 평화로운 탐사 및 이용 관련 동시대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구속적 UN 문서 및 관련 관행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
  - 관련 연성법과 연계하여, 우주물체 발사국의 정보 제공 독려 및 해당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 등록제도 구축 등
  - 관련 연성법과 연계하여, 비차별적인 토대에서 원격탐사 정보의 활용 가능성 증진의 중요성 강조 등
  - 관련 연성법과 연계하여, 우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요청 그리고 공평한 토대에서의 국제협력의 독려 등
- **(최근 논의 사항)** 상기 지속적인 공통 논의 사항 이외에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비구속적 UN 문서로서의 LTS 가이드라인의 의의 확인 및 채택
  - **(2021년)** ▲ 현행 체제는 우주에서의 군사경쟁을 적절하게 예방하지 못하며 이를 위한 방안들의 개발 및 채택 요청 ▲ LTS 가이드라인 실행에 관한 작업반에서는 신우주시대의 특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성을 위한 요소 감안 필요함
  - **(2022년)** ▲ 종래 논의에서 비구속적 UN 문서의 기능을 우주활동에 대한 안정성에서 접근하였던 것에 반해 안보 및 지속가능성 문제가 추가됨 ▲ 우주사무소가 추진하는 “LTS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함 ▲ 우주활동의 발전과 함께 비구속적 UN 문서의 발전도 중요하되 기존의 비구속적 UN 문서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 ▲ 비구속적 UN 문서의 경우 구속력 있는 조약들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향후 군사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를 강조함

### 의제 제12번 관련 제62차 회기 국가별 의견

- **(Group of 77 and China)** 우주의 이용은 평화적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혜택이 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함. Group of 77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외기권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법원칙 선언 등을 포함한 UN 총회 결의안들을 준수하도록 독려함. 정보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정보들에 대한 공유를 촉구함. 우주로부터 지구에 대한 원격감시에 관한 원칙에 의거, 원격감시 데이터는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기후변화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차별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활용되어야 함. 또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감안한 모든 국가들을 위한 혜택과 이해를 위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는 바, 이는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형평한 기반에서 국제협력을 촉진 및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함

- **(일본)** 본 위원회를 통해 우주활동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많은 원칙, 선언 및 지침 등이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발전되어 오고 있음. 비구속적 UN 문서들은 현행 우주조약을 보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함. 일본의 지원으로 비구속적 UN 규범에 대한 질의서가 배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요서(compendium)는 회원국들의 비구속적 UN 규범 관련 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임. 보다 많은 회원국 및 NGO 등이 이행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램. LTS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LTS 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함
- **(러시아)** 비구속적 UN 문서는 다양한 우주활동의 규범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보충기능을 수행함. 다만 비구속적 UN 문서는 경성법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며 우주 탐사와 이용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비구속적 UN 규범의 채택이 필요한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문서들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비구속적 UN 문서가 경성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 됨. 예를 들면 우주교통, 우주잔해물의 적극적 제거, 우주자원 이용 등은 국가책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경성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가 있음
- **(베네수엘라)** 해당 아젠다의 경우에는 우주자원 및 우주잔해물 등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기준의 마련 측면에서 법률소위원회와 과학기술소위원회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함. 법적인 측면에서 UN의 중요한 역할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상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5개 우주조약의 업데이트가 필요함. 회원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규율의 목적은 형평한 기반에서의 평화적 이용, 국제협력의 강화 등임. 현행 규범 체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과 관련하여 예방에 관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규범의 부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주의 평화적 본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우주에서의 각국의 평화적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임. 한편, 모든 회원국들은 우주에서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법이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인류의 유산은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UK)** 비구속적 UN 문서가 국제협력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 및 우주에서의 핵동력원 적용을 위한 안전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LTS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UK는 LTS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의 LTS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해당 보고서는 37개 UN COPUOS 회원국 그리고 5개 정부간기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행 현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22년 발간하였으며 이를 무료 배포하고 있음. 더 나아가 UK는 2023년에도 LTS 가이드라인 이행 촉진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데, 관련 이행 정보 공유 및 촉진을 위한 e-러닝툴 제공 및 4월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음
- **(벨기에)** 연성법은 우주조약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음. LTS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벨기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제 제12는 LTS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각국의 이행 정보 공유와 관련한 법률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중요한 부분임. 벨기에는 LTS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사항을 내년도 회기에서 발표할 예정임
- **(필리핀)** 비구속적 UN 문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행 우주조약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경성법의 발전 역시 강조함. 해당 의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인류 자산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공평하게 사용 및 접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모든 국가들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소수 국가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됨
- **(인도네시아)** 비구속적 UN 문서에 관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개요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법제를 소개하고 있음. 2013년 법률 제21호는 우주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2017년 규정 제45호는 우주활동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관한 사항을, 2021년 규정 제78호는 우주활동 관련 연구 혁신에 관한 사항을, 2018년 규정은 우주에서의 원격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비구속적 UN 문서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임

## 6. 의제 제13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의제 제13번은 우주교통관리에 관한 것임
  - 동 의제는 2015년 독일에 의해 제안되어<sup>50)</sup> 2016년부터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단일의제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다루어지고 있음
- 우주교통관리(STM: Space Traffic Management)에 관한 개념이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UN 또는 여타의 국제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동 의제와 관련하여 몇몇 국가들이 우주교통관리를 “물리적 방해나 전파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로의 접근, 우주에서의 활동, 우주로부터의 귀환의 안전을 증진하는 기술적이고 규제적인 일단의 규정들”<sup>51)</sup>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우주교통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흔히 인용되는 2006년 국제우주아카데미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주교통관리에 관한 정의와 동일한 것임
- 우주교통관리 이슈는 우주활동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하여 우주잔해물을 포함한 우주물체의 양적 팽창 등으로 우주활동의 안전, 안보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우주 감시 및 추적 역량의 개발 및 운용, 우주상황정보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나 유럽우주청 등은 우주상황인식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다른 국가들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sup>52)</sup> 몇몇 국가들의 경우 우주상황 인식 관련 정보의 공유 및 데이터에 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지식과 경험의 이전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표명됨<sup>53)</sup>
- 더 나아가 2016년 이래로 제안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일반적인 사용 및 분석,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 및 우주에서의 상황을 위해 수집, 체계화 및 제공되는 정보 플랫폼을 UN 체제 내에서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음<sup>54)</sup>

50)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four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13 to 24 April 2015, A/AC.105/1090 para. 219, 2015.

51) See e.g.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fif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4 to 15 April 2016, A/AC.105/1113 para. 207, 2016;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seven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9 to 20 April 2018, A/AC.105/1177 para. 198, 2018.

52) 정옥철,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관제 기술동향」, 항공우주 매거진, 제16권 제2호, 2022. 5., 48쪽 참조.

53) 앞의 주 26, paras. 256 and 257.

54) 상계 보고서, para. 258.

- 우주교통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주교통관리에 관한 특정의 규범 또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주교통관리를 포함한 우주활동 또는 우주환경을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sup>55)</sup>이 있는 반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가이드라인 이외에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sup>56)</sup>
- 우주교통관리에 있어서 2019년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관한 지침이 중요한 비구속적 문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sup>57)</sup> 관련하여 동 지침이 우주교통관리를 위해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과학기술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 되었으며<sup>58)</sup> 한편으로는 이 의제의 경우 법적, 규제적 및 기술적 요소가 복합된 것으로서 법률소위원회와 과학기술소위원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는 과제라는 견해도 피력됨<sup>59)</sup>

## 7. 의제 제14번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의제 제14번은 소형위성활동에 관한 것임
  - 동 의제는 우주교통관리를 다루는 의제 제13번과 동일한 시기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2015년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국가 그룹(GRULAC: 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의 제안에 따라<sup>60)</sup> 2016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제55차 회기에서부터 단일의제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음<sup>61)</sup>
- 소형위성(small satellites)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나 구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형위성(1,000kg 이상)이나 중형위성(500kg 이상 1,000kg 이하)보다 가벼운 위성을 지칭하며, 중·대형위성의 경우 소요 기술과 비용의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서 소형위성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기술의 부담이 적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주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국가나 업체가 시도하기 적절한 방안으로 각광 받고 있음. 또한 중·대형위성 대비

55) 상계 보고서, paras. 251-254.

56) 상계 보고서, paras. 255 and 260.

57) 상계 보고서, para. 261.

58) 상계 보고서, para. 266.

59) 상계 보고서, para. 265.

60)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four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13 to 24 April 2015, A/AC.105/1090 para. 219 (Apr. 30, 2015).

61) UN COPUOS,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fif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4 to 15 April 2016, A/AC.105/1113 para. 217 (Apr. 27, 2016).

기술적 한계를 다수의 소형위성을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체로 운영하여 상쇄하는 방식이 활용되면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sup>62)</sup>

〈표 9〉 무게에 따른 국내 위성 구분

위성명	무게(kg)	구분	주요임무
천리안위성	2500-3600	대형위성	기상/해양/환경관측
다목적실용위성	1500	대형위성	전천후지구관측
차세대중형위성	500	중형위성	지구관측
차세대소형위성	100-150	소형위성	핵심기술검증 우주과학연구

출처: 이재민 최충현,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소형위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소형위성이 개발도상국가, 대학이나 교육 및 연구기관, 한정적 자원을 가진 사기업 등에 있어서 우주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우주활동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위성의 우주활동 역시 우주 관련 국제조약 및 연성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sup>63)</sup>
- 최근 소형위성의 증가로 인하여 저궤도 등에서의 과밀화로 인한 충돌 위험성, 천체 관측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우주조약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없는 소형위성의 활동들에 대하여 거버넌스를 개선하거나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및 우주교통관리 등과 함께 과학기술소위원회 및 법률소위원회 공동으로 소형위성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해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소형위성들의 긴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소형위성에 관한 임시적 혹은 여타의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우주활동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가 표명됨<sup>64)</sup>
- 소형위성 활동에 대하여는 2019년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 중에서 특히 지침 A.5가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각국은 이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피력된 반면, 모든 국가들의 소형위성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sup>65)</sup>

62) 이재민 최충현,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소형위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2-5쪽 참조.

63) 앞의 주 26, para. 273.

64) 상계 보고서, paras. 275-278.

65) 상계 보고서, paras. 279-280.

## IV 합의 및 시사점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 UN 외기권위원회 설립 당시 특히 법률소위원회는 우주법 분야에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면서 우주 분야에서의 5개 국제조약 및 관련 연성법 채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최근 우주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한 우주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종래 우주조약들이 규율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2차 회기에서는 새로운 의제가 없는 등 우주 분야 최신 규범 이슈들을 신규 의제로 발굴하여 국제적 규범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신규 논의들은 UN 외기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의제들을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임. 예를 들어 2022년 UN 외기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 신규 의제로 선정되어<sup>66)</sup>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규모 위성군집 문제를 다룬 어둡고 조용한 하늘(dark and quiet skies)에 관한 의제는 이번 제62차 법률소위원회 회기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회기 중 지속적으로 언급되며 주목을 받았음

66) UN COPUOS,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fifty-nin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7 to 18 February 2022, A/AC.105/125, Feb. 23, 2022, para. 262.

- 또한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경우 수년간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측면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지 못함
  - 이와 대조적으로 UN 외기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는 “2019년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은 민간에 의한 우주활동 문제들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술적 이행방안 뿐만 아니라 법률소위원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적인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음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가 우주법 분야의 국제적인 논의에서 보다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가 필요할 것임
  -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하여 조약 성안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최근 국제기구에서 다소 유연한 방식의 협약이 성안되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비준 또는 가입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규범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함
  - 우주활동 관련 최신의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각종 연성법, 예를 들면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주요 의제의 일환으로 해당 연성법들에 대한 회원국의 국내법적 수용을 강조하고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우주법 분야에서 연성법의 역할과 해당 규범 이행을 주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UN 외기권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와의 협업이 필요한 이슈를 선별하여 공동 의제 또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법적 분야에서의 새로운 의제 발굴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대한민국의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참여 현황과 과제

- 대한민국은 2001년부터 UN 외기권위원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볼 때 과학기술소위원회에 비하여 법률소위원회 논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지는 아니함

- 대한민국은 최근 누리호와 다누리호 성공 발사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위상에 부합하도록 보다 활발하게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요청됨
  - 우주법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 연성법에 관한 정보 공유 의제를 제안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의 경우 우주자원의 이용 관련 의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도 향후 새로운 규범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신규 의제로 제안하고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주법 분야에서의 국가위상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UN 외기권위원회에서는 국가 간 차별없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법률소위원회에서는 우주 분야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매우 중요시하여 관련 정보들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역시 우주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주 분야 국제협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률소위원회에서는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조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에 참여하여 글로벌 우주 규범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 현황을 활발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논의에 보다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에서 우주법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법의 정비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률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바, 향후 우주법 분야 연구 기반 조성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주 분야 국제규범들과 국내 우주법 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국내법제 현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함께 향후 법제 개선방안을 위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 및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지침 등 우주 분야 연성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향후 국내법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0 우주개발 백서, 2020. 12
- 김지선, SPREC Insight: 지구 저궤도(LEO) 활용 동향 및 정책과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2022. 11. 14
- 박배근·장민영 외,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Ⅲ - 우주교통관리 등 UN 외기권위원회(COPUOS)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20. 9
- 이재민·최충현,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소형위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 이재완, 「최근 우주법의 주요 문제 - UNISPACE Ⅲ 이후의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림법학 Forum, 제14권, 2004
- 장민영, 「Global Legal Issues: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21. 12. 30
- 장민영 외,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 정영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최근 논의 현황」,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6. 30
- 정옥철,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관제 기술동향」, 항공우주 매거진, 제16권 제2호, 2022. 5

### [해외문헌]

- UN COPUOS, Historical Summar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Question on th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A/AC.105/769/Add.1, Feb. 3, 2020
- \_\_\_\_\_, List of Participants, A/AC.105/C.2/2023/INF/54, Apr. 18, 2023
-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fif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4 to 15 April 2016, A/AC.105/1113, Apr. 27, 2016
-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four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13 to 24 April 2015, A/AC.105/1090, 2015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fifty-seven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9 to 20 April 2018, A/AC.105/1177, 2018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its sixty-second session, held in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23, A/AC.105/128 paras. 61-63, Apr. 13, 2023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the work of its 36th session (1-8 April 1997), A/AC.105/674, Apr. 14, 1997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the work of its 37th session (23-31 March 1997), A/AC.105/698, Apr. 6, 1998

\_\_\_\_\_. Report of the Legal Subcommittee on the work of its 6th session (19 June - 14 July 1967), A/AC.105/37, July 14, 1967

\_\_\_\_\_.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fifty-nin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7 to 18 February 2022, A/AC.105/125, Feb. 23, 2022

\_\_\_\_\_.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sixtieth session, held in Vienna from 6 to 17 February 2023, A/AC.105/1279, Feb. 27, 2023

UN GA, Resolution 1384(XIII), Dec. 13, 1958

\_\_\_\_\_. Resolution 1472(XIV), Dec. 12, 1959

\_\_\_\_\_. Resolution 1721(XVI), Dec. 20, 1961

\_\_\_\_\_. Resolution 1962 (XVIII):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Dec. 16, 1963

\_\_\_\_\_. Resolution 37/92: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Dec. 10, 1982

\_\_\_\_\_. Resolution 41/65: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Dec. 3, 1986

\_\_\_\_\_. Resolution 47/68: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Dec. 14, 1992

\_\_\_\_\_. Resolution 51/122: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Dec. 13, 1996

\_\_\_\_\_.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6/51, Feb. 15, 2002

UN Office of Outer Space Affairs, Annual Report 2019, 2020

**[웹사이트]**

ESA, Space Debris by the Numbers, [https://www.esa.int/Space\\_Safety/Space\\_Debris/Space\\_debris\\_by\\_the\\_numbers](https://www.esa.int/Space_Safety/Space_Debris/Space_debris_by_the_numbers)

KAIST, 인공위성관련 정보, [https://satrec.kaist.ac.kr/mobile/02\\_01.php](https://satrec.kaist.ac.kr/mobile/02_01.php)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Membership Evolution,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members/evolution.html>

\_\_\_\_\_,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Observer Organizations,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members/copuos-observers.html>

\_\_\_\_\_,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ts Subcommittees,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comm-subcomms.html>

\_\_\_\_\_,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ts Subcommittees, <https://www.unoosa.org/oosa/en/ourwork/copuos/comm-subcomms.html>

KLR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6호  
**Global Legal Issue**

2023년도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분석 및 시사점  
- 연성법 정보 공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